

예산총칙

2024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24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562,251,004	16,867,530
일반회계	540,183,154	16,205,495
특별회계	22,067,850	662,036
기타특별회계	22,067,850	662,036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1,124,004	33,720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	537,724	16,132
주차장특별회계	2,852,406	85,572
수질개선특별회계	17,553,716	526,611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서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"계속비 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,581,003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 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차입한도액은 40,4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「지방재정법」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